

제307회 임시회
2012. 3. 12.(월)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3. 12.(월)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박종성 의원 외 6명

나. 발의일자 : 2012년 2월 23일

다. 회부일자 : 2012년 2월 24일

라. 상정일자 : 2012년 3월 6일

(제3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생략)

가. 제안이유

충청북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3조 및 제4조)
- 공사감독공무원은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 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하고,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업체를 관리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도는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대가 중 일부를 하수급인과 근로자 및 건설기계대여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 상담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도지사는 사업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금지급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평가하고,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연병호)

금번 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및 임대료 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을 3억원 이상의 공사,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원 이상의 공사와 1억원 이상의 용역, 일반용역은 5천만원 이상의 용역으로 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체결, 임금 지불서약서 제출 등 사업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공사감독공무원에게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공사대금의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음.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체불이 없도록 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6개 광역시 및 4개 도와 50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에 있는 조례로 제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 조례를 통하여 지역 근로자의 임금체불 등을 방지함으로서 지역 근로자를 위해 바람직한 조례라고 사료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등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와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도(도, 도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가 2분의 1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용역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
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공공기관 위생관리용역사업”이란 도내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하여 청소 등을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8.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9. “위생관리용역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위생관리용역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0.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1. “건설기계대여사업자”란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13.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각종 장비 등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임금 및 임대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3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원) 이상의 공사
2. 1억원(일반용역은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및 건설기계대여사업자, 그 밖의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 등의 임금과 임대료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3조에 해당하는 자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명단, 연락처, 주소,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내역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①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 시 공사감독공무원은 하수급인 및 근로자 등에게 지급예고 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 ②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시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사실을 현장 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 ① 공사감독공무원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②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
3.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제8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근로자 등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근로자 상담) 도지사는 제8조의 신고센터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 상담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 등 요청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 중에서 성실히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도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임금 등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실적평가 및 게시)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의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매년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결과를 매년 상반기 중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적평가 시 도의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용역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조례는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